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서

5분 자유발언 : 1명

- 김홍섭 의원 :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고자 : 표주숙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1건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2건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대표위원 : 이흥희 의원
- 검사위원 : 양호일, 이선우, 오영재, 손재호



의 사 일 정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 25.(수)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2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회운영위원회 3
4.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총무위원회 4 ~ 13
5.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3.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14 ~ 24
15.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 의 안 건	비 고
21.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2.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3.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4.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총무·산업건설 위원회 25
【산 회】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25. 10:00)

5분 자유 발언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김 홍 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가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정의 방향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구조 변화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지역을 떠나고 있고, 자영업자는 버티기에 급급하며, 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기후 불안정 속에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역시 정책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첫째, 재정 구조의 전환입니다. 현재 예산 편성 방식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보다 확보 가능성과 집행 중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건립비는 확보하지만,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중장기 추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반복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정책 효과 분석과 재정 지속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미래 투자 분야로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절감된 재원은 청년 정착과 미래 산업 기반 등 장기 투자 분야로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정착 구조의 강화입니다.

지금의 청년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창업, 관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빈집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지역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취업 연계, 창업 공간과 멘토링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청년 정착 패키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과 유통 구조 전환입니다.

거창군은 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상당하지만, 농산물의 유통·브랜딩·가공 역량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농업 정책의 방향을 생산 중심에서 유통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확대만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연계를 확대하고 계약재배와 공동 브랜드, 가공·저장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안에서 부가가치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군정 사업은 확정 이후 설명 중심입니다. 정책은 확정 이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단계부터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요 정책은 사전 공개와 공청회, 의견 반영, 결과 보고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책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옵니다. 투명한 행정이 곧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세대를 남깁니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농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과 공동체에 투자하는 구조 전환의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부도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4. 심사결과	3
5. 변동조서	3
6. 조건부 승인조서	4

II .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 심사경과	5
2. 제안사유	5
3. 근거법령	5
4. 기금운용 변경계획	6
5. 질의 및 답변 요지	7
6. 토론 요지	7
7. 수정안 요지	7
8. 심사결과	7
9. 소수의견 요지	7
10. 기타 필요한 사항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3.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6. 3. 6.
-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3. 24.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52,388,837	831,275,322	21,113,515	2.54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소 계	811,809,302	790,695,787	21,113,515	2.67
	지방세수입	41,778,799	41,632,075	146,724	0.35
	세외수입	35,067,910	33,980,030	1,087,880	3.20
	지방교부세	327,438,000	325,200,000	2,238,000	0.69
	조정교부금등	30,283,815	26,650,000	3,633,815	13.64
	보조금	269,524,767	268,018,370	1,506,397	0.56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07,716,011	95,215,312	12,500,699	13.13
공기업특별회계	40,579,535	40,579,535	0	0.00	

3. 세출예산안 대비표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52,388,837	831,275,322	21,113,515	2.54
일반회계	790,178,883	774,065,804	16,113,079	2.08
특별회계	62,209,954	57,209,518	5,000,436	8.74
기 타	21,630,419	16,626,983	5,000,436	30.07
공기업	40,579,535	40,579,535	0	0.00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52,388,837	831,275,322	21,113,515	2.54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811,809,302	790,695,787	21,113,515	2.67
	의회운영위원회	1,333,896	1,333,896	0	0.00
	총 무 위 원 회	458,447,397	462,750,071	-4,302,674	-0.93
	산업건설위원회	352,028,009	326,611,820	25,416,189	7.7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0,579,535	40,579,535	0	0.00	

4. 심사 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1건에 200,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변동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감액)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1건	200,000	▲200,000	0		
1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	공무원 복지 지원 강화	직원생활 관 건립	401-01 (직원 생활관 건립)	200,000	▲200,000	0	사업 재검토	145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6. 조건부 승인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해당 없음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3.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6. 3. 6.
- 라. 상정일자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3. 24.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54,315,125	1,256,089	39,810,959	△38,554,870	15,760,255
재정안정화계정	41,575,902	952,614	37,400,000	△36,447,386	5,128,516
통합계정	12,739,223	303,475	2,410,959	△2,107,484	10,631,739

2) 수입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42,528,516	42,519,870	8,646	
공공예금이자수입	952,614	952,614	0	
예치금 회수	41,575,902	41,567,256	8,646	
기타회계전입금	0	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042,698	13,041,998	700	
공공예금이자수입	303,475	303,475	0	
예치금 회수	12,739,223	12,738,523	700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	-	

3)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42,528,516	53,519,870	8,646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128,516	12,519,870	△7,391,354	
일반회계 전출금	37,400,000	41,000,000	7,400,00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042,698	13,041,998	700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	10,508,892	10,508,192	700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91,100	91,100	0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31,747	31,747	0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000,000	1,000,000	0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410,959	1,410,959	0	

▣ 고향사랑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①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②=③+①
		수입②	지출③	증감 ④=②-③	
고향사랑기금	984,552	402,186	166,461	235,725	1,220,277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86,738	1,386,738	0	
공공예금이자수입	15,831	15,831	0	
기부금수입	386,355	386,355	0	
예치금 회수	984,552	984,552	0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유
합 계	1,386,738	1,386,738	0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예치금	1,220,277	1,256,698	△36,421	
종합사회복지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	30,000	30,000	0	
영유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0	50,000	0	
찾아가는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	30,040	30,040	0	
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	36,421	0	36,421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가. 제안이유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 기구인 「도민 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거창군의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도민체전기획단을 추가함.
(안 제13조제2항제3호)
- 거창군의회가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출연기관과 답변자를 규정(안 제28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개정안은 ‘도민체전기획단’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임 위원회를 정하고,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거창군의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u>도민체전기획단</u> ,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제28조의2 (출석·답변 요청의 범위)	(규정 없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비의무적으로 출석·답변 요청 가능 - 대상: ① <u>거창문화재단 사무처장</u> ② <u>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센터장</u>

- 안 제13조제2항제3호에 도민체전기획단을 추가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도록 함.
- 안 제28조의2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출석·답변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의회가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체전 관련 의회 감독 강화, 출연기관 운영 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건설위원회: 도민체전기획단,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출석·답변 요청의 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문화재단의 사무처장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센터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제 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3.25.)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행복나눔과	1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행복나눔과	7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보건정책과	13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행 정 과	19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25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31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35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41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략담당관	45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재 무 과	50
11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수탁 협약 체결)	관광진흥과	53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 라. 시설점검 및 점검 인력 확보(안 제5~6조)
- 마.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공적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9월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함.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4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031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3,033건(50.3%)
 -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 2,236건(73.7%), 본인신고 612건(20.2%)
- 학대판정사례 1,449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6,514회 실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1.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4.7%, 뇌병변장애 6.8%, 자폐성장애 6.4%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부(父) 10.4%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5.0%,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7.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를 차지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 또한, 학대판정사례는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 (2.2%) 증가하였고,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1.1%(1,030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피해장애인 연령대: 10대 이하 330건(22.8%), 20대 328건(22.6%), 30대 262건(18.1%) 순임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 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 추가 설치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되고,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규정된 자치입법으로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인권침해 범위의 해석, 관계기관 협력체계, 개인정보 보호, 예산 지원 기준 등은 상위법령 및 기존 행정체계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 인권침해 및 학대범죄의 적용 범위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명확히 운영할 것
 - 경찰·복지기관·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
 - 신고 및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절차를 철저히 마련할 것
 - 예산 지원의 대상·범위·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의 사항을 시행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인적 자원 강화 및 거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할 것임.
-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26년 3.8%로 상향 조정함.
- 반면,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단순 반복 노동이나 단기 공공 근로에 치중되어 있어 근로 지속성이 낮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업 능력이 높은 경증 남성 장애인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2024년 9월 국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5년간)간 복지부 산하기관 28곳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15억 6300만 원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

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 거창군에서도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 군 직접 운영 사업 및 민간위탁 시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근거로 군청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설정하고 홍보 강화
 - 농산물 가공·포장, 관광지 환경 정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
 -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상담 지원, 군 발주 사업 가산점 부여 등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비예산적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의 적극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적극구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안내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안 제2조)

다. 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안 제3조)

라. 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안 제4조)

마. 지원대상(안 제5조)

바.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난해 국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최소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한 환자는 171만 7239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이상이 138만 4209명으로 전체의 80.6%에 달함.

☞ 이는 2020년 대비 52.5% 증가한 수치임.

○ 또한,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 명에서 2021년 130만 명, 2022년 141만 명, 2023년 154만 명, 지난해 16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 원인은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수는 2025년 1월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서고, 거창군은 올해 2월말 기준 19,954명으로 전체 인구(58,737명) 대비 33.97%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에 근거한 자치사무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목적, 시행 계획 수립, 기능, 지원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안 제4조 제1항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 활동"임을 명시하여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다만, 본 시책을 추진할 시에는 안 제6조 제2항의 '실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무료진료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해야 할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3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①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

②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③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재훈]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및 상호존중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실무자문회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거짓신고,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최근 매니저 갑질뿐만 아니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 했으며,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침. 특히,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함.
- 이에 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과거 '관행'으로 치부되던 위계적 갑질을 '근절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공직 문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정과 인권을 중시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의원면직)을 방지하고 소속감을 높이는 정책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익명성 보장이 성패의 핵심으로 신고자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비밀 유지와 감사 부서의 독립적 운영이 향후 과제임.

- 덧붙여, 연 1회 실태조사(안 제9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잠재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집행부의 강력한 운영 의지가 병행되어야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실무자문회의를 활성화하여 주관적 해석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거창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기관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
 -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라.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 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실무자문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

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신고자·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영유아 양육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전입세대에 지방세를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 확대·신설 및 정비함(안 제2조)
 - 1)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기간 6세 미만 ⇒ 8세 미만
 - 2) 신설: 전입세대에 지방세 지원
 - 3) 그 밖에 세부 지원사업 명확히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생 시 단발성 또는 단기적(20~60개월)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지원 기간을 8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 출산축하금을 분할 지급(0세~6세) 형태로 변경하여 1세부터 6세까지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성장 단계별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됨.
- 주요 항목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 (기존 기준)	개정안 (변경/신설)	비고
조례 제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 감소대응 조례	외연 확장
출산축하금	1인당 500만 원 (일시/분할)	0세 200만 원 + 1~6세 매년 300만 원	총액 대폭 상향
양육지원금	6세 미만 (최대 20~60개월)	8세 미만(초교 입학 전까지)	기간 연장
전입지원	정착금, 기념품, 종량제봉투 등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지원 추가	신규 인센티브
다자녀기준	두 자녀 이상 세대	다자녀 세대 (명칭 정비)	용어 현행화

- 또한, 지방세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세(11천원)와 재산세(평균 70천 원)를 지원할 예정으로 금액의 절대 규모보다 '세금 내주는 거창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다만, 재산세 지원의 경우 주택 소유 가구와 임차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 임차인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책(월세 지원 등과 연계)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에 기존 '두 자녀 이상' 표현을 '다자녀'로 정비하고, 전입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 학교로의 유학 및 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책으로 보임.
- 하지만, 1차 연도 17억 원에서 5차 연도 73억 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고 재정 투입 대비 인구 유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원금이 상향될수록 '위장전입'이나 지원금 수령 후 즉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 된다할 것임.
-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은 다른 지자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 가. 출산 축하금
 - 나. 임신축하 기념품
 - 다. 임산부의 건강 지원 등
2. 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 가. 양육지원금
 - 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 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
3. 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 가. 전입정착금
 - 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
 - 다. 빈집정비 지원
 - 라. 지방세 지원
 - 마.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지원
 - 1) 장학금, 학자금
 - 2)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및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 청년이 결혼하도록 북돋우고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등 청년이 거창군에 거주·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안원칙,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정비함(안 제6조·제10조·제12조·제21조)
- 나. 생활안정 지원사업 변경·확대함(안 제16조의2)
 - 1) 사업명 변경: 결혼축하금 ⇒ 결혼장려금
 - 2) 사업 확대
(현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5년간(기존 3년간) 분할 지원(연 200만 원 예상)하고, 주택 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으로 장기 분할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상시 거주를 유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주택 구입 비용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자산 형성 능력이 있는 일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공공 위원회 위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년이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정책”을 “거창군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요사항”을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거창군”을 “제9조에 따른 거창군”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을 “문화예술”로 한다.

제10조의3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결혼축하금”을 “결혼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을 “주택 구입비용이나”로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장려금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혼축하금 경과조치)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혼인 신고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한마음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군민에게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군민의 독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명·제1조·현행 제3조·제8조)
- 나.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신설함(안 제8조)
- 다. 시설 현행화,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10조·제13조)
-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20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도서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되고 있어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활용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한 도서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개인·아동 또는 어르신 복지시설, 마을 도서관 등 무상배부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
- 하지만, '폐기 도서'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오·훼손이 심한 도서가 배부 될 경우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부재할 경우 특혜 논란이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배부 대상 도서의 선별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수립해야 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항목별 변경사항 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기존 기준)	개정안 (변경/신설)	비 고
조례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	명칭 간소화 및 현행화
도서 배부	(규정 없음)	제작·폐기 도서 무상배부 신설	자원 재활용 근거 마련
시설 명칭	부속시설	부대시설	용어 정비(실태 반영)
위원 해촉	일반적 사유	성범죄 및 이동학대 전력자추가	도서관 안전성 강화
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정함	위원장 직무 및 운영 규정 명문화	자치법규 입안원칙 준수

- 성범죄 전력자 해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소집·의결 정족수 등 운영 절차를 명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관의 특성상 위원 구성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음.
- 또한, 기존 '교육 및 문화계 인사' 중심에서 '이용자 및 지역 주민대표'로 위촉 범위를 확대함.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합치성을 확보하고, 도서관 자원의 사회적 환원을 추진하는 등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2. 열람실
3. 북카페
4. 부대시설 등

제4조제1항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자료대출)”을 “(도서관자료 대출)”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군수는 제적·폐기 도서(간행물을 포함한다)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거창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 조 제목 “(부속시설 이용)”을 “(부대시설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를 “부대시설 이용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속시설”을 “부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의 조 제목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이용의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부대시설의 이용”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제1항 중 “「도서관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위촉직 위원: 문화·교육·복지 관련자,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8조에 제6호·제7호를 신설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3. 6.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함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개정)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 기존 5년간 50% 감면에서 → 최초 5년간 50% + 이후 3년간 25% 추가 감면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인 혜택 기간을 총 8년으로 연장함.

☞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 감면 기준

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투자금액	고용인원
제조,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물류, 연구개발 등	20억 원 이상	30명 이상
관광호텔, 전문휴양업, 문화예술, 공연장 등	5억 원 이상	10명 이상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0억 원 이상	15명 이상

※ 개발사업 시행자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은 지자체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 조례로 기한 내 (2026. 7. 2.)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 조례 개정으로 기업 유인책이 강화되면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인구 유입(특히 청년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나타나듯 현재까지 감면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확대된 감면 혜택을 핵심 무기로 삼아 승강기 및 바이오 등 우리군의 전략적 타겟 업종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인 유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 기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법령 준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변경)

1. 제안이유

- 가.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따라 행정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용도폐지) 및 일부 처분(매각)하여 사업 자원 일부를 환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4번지 일원
- 2) 사업기간 : 2023. ~ 2027.
- 3) 사업면적 : 96,638㎡ / 80필지
- 4) 사 업 비 : 32,205백만원(군비 100%)

구분	계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	비고
금액(백만원)	32,205	2,564	9,625	16,700	3,316	
구성비(%)	100	7.9	29.9	51.9	10.3	

5)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조성

- 주요 예정 시설

(의료)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과300병상/응급·심혈관센터 등

(임신)행복맘센터 : 영아·임산부 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출산)공공산후조리원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등

(육아)육아드림센터 : 영유아 종합돌봄시설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 【붙임1】참조

1) 처분면적 : 12필지 15,300㎡ 중 6,977㎡

2) 처분내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생활시설용지(총 17블록 설정)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A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7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6층 이하	

3) 처분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4)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

다. 추진경과

1) 202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2) 2023.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확정

- 3) 2023. 9.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4) 2023. 1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5) 2024. 8. :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6) 2025. 3.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경상남도)
- 7) 2025. 8. : 실시계획인가 고시
- 8) 2025. 12. : 토지매입 완료(일부 수용재결)

라. 향후계획

- 1) 2026. 2.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 2) 2026. 3. : 근린생활시설 용지 감정평가 및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 3) 2026. 4. ~ 5. :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 홍보
- 4) 2026. 6. : 공급공고 및 일반(경쟁)입찰, 계약체결
- 5) 2026. 9. : 병원용지 등 조성원가 산정 및 계약(교환) 체결

마. 기대효과

- 1) 의료복지타운 이용자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2) 잔여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토지 관리의 합리성 확보
- 3) 매각 대금 확보를 통한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비 일부 환수
- 4) 공공·민간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변경)

- 본 동의안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의 기초 생활거점조성 부지 중 일부를 일반입찰로 매각하여 사업 재원을 환수하고 편의시설 부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처분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업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2023.9.12.) 시 최
초로 승인 받은 건임.
-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성된 땅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
하는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추가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당시 생산녹지지역이었으나, 경남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사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 일부를 민
간 분양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조성하고, 조성된 17
필지를 매각하여 사업 재원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임.
- 수익은 공시지가 기준 약 3억 1,313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계획임.

- 의료복합타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병원 및 조리원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약국, 편의점, 식당 등 필수 편의시설의 자발적 형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이나
- 공공부지 축소 및 잔여 부지 부족으로 향후 의료타운 확장이나 추가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균유지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공(병원·복지)과 민간(근생)의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려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이며,
-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특히 매각 대금을 통해 사업비를 일부 환수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윤광식]

1. 제안이유

- 거창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상지역 : 2026. 1. 1. 현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나. 대상면적 : 32.20km²

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면 적(m ²)	도 시 지 역
합 계	32,200,603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일부 지역
거창읍	26,767,975	상림리·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장팔리·정장리·동변리·서변리·가지리·양평리·학리 일부 지역
웅양면	2,773,000	죽림리·동호리·산포리·노현리 일부 지역
마리면	455,000	영승리, 하고리 일부 지역
남상면	1,310,893	대산리·월평리 일부 지역
가조면	893,735	대초리·일부리·마상리·수월리 일부 지역

라. 고시면적 변경 내역

금회 고시면적 (2026. 1. 1. 기준)	종전 고시면적 (거창군 고시 제2024-59호)	증감 면적
32,200,603m ²	32,210,186m ²	(감) 9,583m ²

마. 고시면적 변경 사유

변경지역	계	증감면적	증 감 사유
남상면	(감) 9,583	(증) 78 (감) 9,661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5-38호(2025.04.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창군 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5년 4월에 시행된 거창군 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남상면 일부 지역의 경우,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농업진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해 왔음.

- 용도지역 조정(공업지역→농림지역)으로 전체 고시 면적이 9,583m²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시지역분 세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개발 혜택이 없는 농지에 부과되던 도시지역분 세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당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실익이 더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적 절차 및 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수탁 협약 체결]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1. 배 경

- 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2023년), 우리군 참여 사업으로 지리산권 2개 사업 선정
- ※ 지리산권 6개군 공동사업 (경남)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전남) 구례
- 나. 2025년 6개군 공동으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완료, 올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 조직 필요성 대두

2. 개 요

- 가. 협 약 명 :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
- 나. 협약기관 : 경상남도, 지리산권 6개군, 경남관광재단
- 다. 위탁사무
 - ┌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 지리산권 웰니스 및 위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라. 수 탁 자 : 경남관광재단

- 마. 기 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위탁사무의 종료일까지
- 바. 위탁예산 : 214백만원(국 107, 도 32.1, 군 74.9)

3. 사업 세부내용

가.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 1) ESG가치여행 완주 인증 및 보상제도 운영
- 2) 지자체 개별 및 연계 관광상품 운영, 미션투어 개발
- 3) 성과관리 모니터링, 인건비 등

나.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 1)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여행상품 운영 등)
- 2) 지리산권 연합 팝업스토어 추진, 통합 홍보
-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4. 그간 추진사항

가. 2025. 4. :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 착수보고회

나. 2025. 5. ~ 10. : 중간보고회, 경남도 및 지자체⇔용역사 회의 등

다. 2025. 11. :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

라. 2025. 11. : 웰니스 및 워케이션 팸투어 운영

마. 2026. 1. 13. : 거창군의회 사전 보고

바. 2026. 2. 24. : 협약 체결 완료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타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협약 체결 후 동의 절차 추진

5. 향후계획

가. 2026. 3. : 경남관광재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나. 2026. 4.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경상남도, 6개 지자체)

다. 2026. 4. ~ : 사업비 교부, 지리산권 사업 추진

6. 기대효과

- 가. **지리산권 광역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6개 군 공동 상품과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인 지리산권 인식 효과 기대
- 나. **ESG 가치여행 및 웰니스 특화로 체류·소비 확대**
 - 완주 인증제, 웰니스 및 위케이션 상품 고도화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
- 다.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 실행력 확보**
 - 경남관광재단 중심의 통합 기획·운영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문체부와 경남도를 비롯한 부산·울산·광주·전남 등 5개 광역시도가 함께 발표한 사업으로,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총 3조원을 투입하여 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것임.
-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와 거창군을 포함한 지리산권 6개 시군이 관광 기획·상품화·마케팅을 아우르는 전문 역량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지리산'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광역 관광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사업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5조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
- 본 안건의 경우, 협약 체결 후 동의안을 제출한 사후 승인 형태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할 것임. 이는 타 시군과의 공동 보조 및 적기 추진을 위한 불가피성은 일부 인정되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간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사업과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14백만원이 소요됨.

☞ '26년 사업비 : 1,284백만원(국 642, 도 192.6, 군 449.4)

사 업 명	계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구례 (전남)
계	1,284	214	214	214	214	214	214
지리산권 ESG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540	90	90	90	90	90	90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744	124	124	124	124	124	124

- 거창군은 타지역이 갖지 못한 가조 온천과 창포원이라는 독보적인 치유 자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단순 참여를 넘어 지리산권 전체를 잇는 웰니스 로드의 핵심 거점이자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안전총괄과	1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환경과	5
3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농업축산과	13
4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농업소득과	18
5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25
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29
7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행복농촌과	33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과	38
9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도시건축과	41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도시건축과	45
11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도시건축과	49
12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행복농촌과	53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2)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3)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격려코자 하는 목적으로써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 정의에서 「병역법」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지급 대상을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실 거주자에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지급 방법을 1회 지급 원칙으로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 이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며, 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상 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완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군수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24.1.1.)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 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바.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 사. 집행계획등의 심의자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24.1.1.)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단순히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목적을 확대함.
- 안 제3조에서는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 최종처분의 단계적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기본원칙을 구체화함.
- 안 제5조에서 군수는 국가 시책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시

행을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최소화 등 실질적 노력 요구, 군민은 생활 속 재사용·재활용 실천 강조함으로써 주체별 책무를 강화함.

- 안 제6조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 교육·홍보, 위탁사업 가능성까지 규정하여 순환경제 문화 조성을 유도함.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과 통계조사 권한 부여로 정책 근거 강화함.
- 안 제11조에서는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기존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조례의 구조는 목적 → 정의 → 원칙 → 책무 → 실행체계 → 지원 → 심의 → 교육 → 부칙 순으로 행정조례의 전형적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정의·기본 원칙과 일치하며,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남은 없음.
- 이 조례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특히 군민·사업자·행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문화·교육·재정 지원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을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집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집행계획 등의 심의·자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시행
2.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거창군 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 사업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 기능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정립도 필요해 보임.
- 안 제2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의를 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확보됨.
- 안 제3조에서는 단순한 지원 의무를 넘어 밀원식물 확대,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실태조사, 질병 방역, 경영안정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 항목을 명시하여 지원계획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시설·기자재, 신제품, 토종별, 유통·판매, 축제·문화행사까지 포함해 산업적·문화적 가치 모두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소비 촉진까지 연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을 포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본적으로 정합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 안 제5조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봉산업법」 제 12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 이 조례는 양봉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지역경제·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7조(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서덕들은 우수한 경관과 생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관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관 관리의 지속성과 농가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경관·관광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보전 및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주민지원사업(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의 경관을 보존하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농업경관 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축을 명확히 설정하였음. 다만,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 보전을 추가한다면 목적의 포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3조 정의 조항에서 “농업경관”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 이므로, 논·밭·전통 농업 경관 등 구체적 예시를 포함한다면 해석의 명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서덕들”의 범위 지정 권한이 군수에게 있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는 군수가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 함으로써 민·관 협력 구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경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광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취지와 내용이 일치하므로 현행 상위법령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음.

- 서덕들은 금원산과 현성산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과 청정 황금들녘으로, 전봇대와 비닐하우스가 없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 농촌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임.
- 논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 풍경이 특히 아름답고, 사계절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 생태·문화·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덕들은 단순한 들판이 아니라 자연·문화·경제가 교차하는 복합자원으로써, 이를 보전하면서 지역 관광 및 농업 소득과 연계하는 전략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보전해 온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성화해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덕들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서덕들 경관의 핵심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전봇대 미설치, 비닐하우스 지양, 벼농사 중심의 경작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적 경관관리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2. 서덕들의 황금 들녘을 형성하는 벼농사 기반의 전통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경관·생태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3. 서덕들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4. 서덕들 육성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며, 사업 과정 전반에 주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5. 참여 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관”이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량 공급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모습이나 경치를 말한다.
2. “서덕들”이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농업경관 보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덕들의 환경 및 농업자원 조사
2.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3. 경관 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 지원
4. 농업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
5. 서덕들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
6. 주민 참여형 보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7.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편의·기반 시설 설치
8.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9. 그 밖에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서덕들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관 보전 대상 구역의 지정 및 경관작물의 선정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
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서덕들 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
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마련
6.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관부서의 장, 위천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농업·경관·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및 농가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강신여]

가. 제안이유

-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여 거창군의 임업소득 증대 및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업경영 교육·훈련을 신설함(안 제6조)
 - 1) 대상: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
 - 2) 내용: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림경영 등
 - 3)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개정안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고자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 제6조를 신설함으로써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업인뿐 아니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음.
- 제6조제2항에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산림기본법」 제2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교육·훈련과 관련해 임업인의 권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업경영 교육·훈련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자

치입법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거창군은 농업·산림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며, 임산물 생산과 산림경영은 지역의 토지 이용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으로 거창군의 산업 구조상 ‘임업 인력 육성’은 필수 기반 산업으로 보여지며,
- 단순 채취형 산업이 아니라 재배·관리·수확·유통·가공·경영까지 포함하는 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2. 산림경영
3. 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신동일]

가. 제안이유

-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하는 누구나 창포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람차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19조)
- 관람차 이용제한 등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개정안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부과·감면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안 제19조를 신설함으로써 관람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행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명시하여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 관람차 운영·요금·이용 제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관람차 구입·대여·인건비 등 초기 비용은 있으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 관람차를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교통약자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체험 요소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관련 법령 검토결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위반 소지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관람차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람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포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차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편의가 필요한 사람이나 거창군민, 공공 목적 등에 따라 관람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차 요금은 제23조를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9조의2(관람차 이용제한 등) ① 군수는 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관람차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람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료등, 관람차 요금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입장료, 순환버스 운영,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교통통제 등, 위탁을 정함(안 제9조~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조례안은 별바람 언덕 행사 개최 시 입장료와 순환버스 운영 등 관람객의 편의 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 거창군 별바람언덕 행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안 제5조, 제6조에 따라 순환버스 운영, 임시 주차장 지정, 교통 통제 등으로 방문객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7조에서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입장료·버스 이용료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에 따라 교통통제 및 차량 진입 제한으로 일부 방문객들의 불편·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 강화 및 현장 안내 체계 구축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감악산 별바람언덕은 해발 약 900m에 위치해 산지 특성상 도로 폭과 주차 공간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꽃별여행 축제’ 기간에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 본 조례안에 따른 교통 통제로 일부 관광객의 불편과 행정·재정적 부담이 동반될 수 있으나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등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차량입장료)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군수는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 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
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
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

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별바람언덕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이용료,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강신여]

가. 제안이유

■ 사업명: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 매입

- 대성중학교 배후부지 공원 조성으로 주민 편의 증진
- 2025. 7월 군민 행복토크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소유자 (도향교재단)의 매각 승인에 따른 토지 매입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1) 사업명 :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 2) 사업비 : 735백만원(군비) ※ 감정평가결과 반영
- 3) 사업기간 : 2026. 3. ~ 7.
- 4) 주요내용 : 토지 협의 매입
- 기존 수림 최대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 학생 야외학습장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 산책로 및 건강증진시설 설치로 휴식·여가공간 제공

○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용도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4,126	4,126	259,93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산94-6번지	임	4,126	4,126	259,938	2026. 4.	공원 조성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공시지가 63,000원 /m²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사업은 대성중학교 배후부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취득 대상 토지는 임야 4,126m²이며 공시지가는 m²당 63,000원으로 기준가격은 약 259,938천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감정가는 735백만원으로 책정됨.
- 도심 내 부족한 생활권 공원 확보, 학생 야외학습 및 생태 교육 공간 제공, 주민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 기존 수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등의 측면에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군민 행복토크를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관련 의견을 듣고 향후 집행예산 편성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거창군 군계획시설 전체 현황

- 전체 군계획시설 : 1,089개소 / 31,554,438㎡
- 집행 완료 : 822개소 / 13,597,653㎡
- 미집행 시설 : 240개소 / 9,954,824㎡

나. 시설 유형별 주요 특징

- 하천시설 : 206개소 / 9,682,543m² (장기미집행 대부분 차지)
- 도로시설 : 14개소 / 95,934m²
- 공원시설 : 3개소 / 85,691m²
- 녹지시설 : 1개소 / 4,942m²

다. 단계별 집행계획

- 총 미집행시설 : 240개소 / 사업비 5,918억 원
- 1단계(2025~2027) : 22개소 / 786억 원
- 2단계(2027년 이후) : 216개소 / 5,131억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보고안에 따르면 거창군 전체 군계획시설 1,089개소 중 240개소가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24개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나타나 군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이 하천시설(206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및 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총사업비가 약 5,9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장기계속 사업 추진,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미집행시설 중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도시 관리 차원에서 과감한 정비 또는 해제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설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가. 제안이유

- ‘22년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시간” 및 “군수 읍면순방”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건의를 수용하여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음.
-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전역(농업진흥지역 63km² 중점)
- 2) 대 상
 - 농업진흥지역 해제(65개소 1,066필지)
 - 용도지역 변경(51개소 871필지)
- 3) 기 간 : 2023. 11. ~ 2026. 11.
- 4) 사 업 비 : 319백만원
- 5) 내 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나. 대상지 내역

- 1) 농업진흥지역 해제 : 거창군 전역 65개소 632,801m²
- 2) 용도지역 변경 : 거창군 전역 51개소 492,236m²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개소 44,117m²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33개소 219,353m²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2개소 24,414m²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4개소 204,352m²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장기간 경과하면서 토지 이용 현황과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해제는 농지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만,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로 농업 여건이 크게 변화하거나 실제 농업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이번 계획은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시 농지의 생산성, 집단화 여부, 향후 농업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량 농지가 무분별하게 해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용도지역 변경 이후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반시설 계획과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용도지역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개발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대상지 선정 과정 및 향후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가. 제안이유

- 고대 성곽 유적인 거열산성(군립공원)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거열산성 진입도로” 전체구간 중 2공구 종점부 산지 지역에서 “거창 분산성 발굴조사” 결과 거창 분산성 체성부 추정범위에 사업노선(2공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거열산성 진입도로(중로1-16호선)의 군관리계획 선형 변경이 필요함.
-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하여 중로 1-16호선 및 연접도로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개요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중로1-16 : 선형 변경

(B=20m→20~23m, L=4,572m→4,590m)

- 중로1-13 : 선형 및 종점 변경

(B=20m, L=2,200m→2,294m, 종점 : 중로1-16→중로3-5)

- 소로1-25 : 선형 및 기점 변경

(B=10m, L=236m→111m, 기점 : 중로3-5→중로1-16)

○ 결정(변경)사유

1)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한 중로
1-16호선 선형변경

2) 중로1-16호선 변경에 따른 연계노선(중로1-13, 소로
1-25)선형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안건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
시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거창 분산성 체성부 추정 범위와
사업 노선 일부가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및 사업 추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임.

-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로서 거열산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또한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역사유적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기존 노선 변경에 따라 연계 도로인 중로1-13호선 및 소로1-25호선의 선형을 함께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거창 분산성은 지역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향후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호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도로 개설 과정에서도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본 사업이 단순한 도로 개설에 그치지 않고 거열산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계획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안건은 문화재 보호를 고려한 도로 선형 조정이라는 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대책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26. 3. 2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 라. 상정·의결일: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조경자]

가. 제안이유

-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수립 중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획 개요

- 1) 계획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 2) 계획기간 : 2026. ~ 2035.(10년간)
 - ※ 여건 변화를 고려 5년마다 재검토, 필요시 정비(수정, 보완)
- 3) 수립방법 : 전문업체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업체 : (주)엔브이(경남 창원 소재)

- 용역기간 : 2024. 9. ~ 2026. 6.(22개월)

- 용역비 : 339백만원

4) 주요내용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지자체별 2개지역 이상 필수)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농업 기반 약화 등으로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군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농촌협약 등 정부 지원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이 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계획에서는 거창군을 북서부권과 남동부권으로 구분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권역별 핵심 전략 사업, 생활SOC 확충 방안, 농업·관광·산업 연계 전략, 등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전략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이 총 49개소로 도출되어 있으나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협정 체결 여부, 토지 이용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후보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계획으로, 재생활성화지역별 핵심사업을 구체화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농촌협약을 통해 최대 40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만큼 거창군 여건에 맞는 핵심사업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남도내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대부분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5~2026년 사이에 용역 착수 또는 수립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 일반 군 단위 용역비는 대부분 3~5억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